

제2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
【2023. 6. 27.(화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·교통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6월 27일
전문위원 배 금 택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71
- 나. 발 의 자: 강선영 의원 외 5명
- 다. 발의일자: 2023년 5월 30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6월 1일

2. 제안이유

-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8조)

- 다.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, 깃대종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 ~ 제10조)
- 라.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생물 구조 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1조)
- 마. 생태계 교란생물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 (안 제12조)
- 바.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, 교육, 홍보를 규정함(안 제13조 ~ 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협조부서: 공원녹지과
- 다. 입법예고(2023. 5. 31. ~ 6. 8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강서구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및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여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임.

나. 주요 제정내용

○ 기본원칙(안 제2조)

-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의 기본원칙을 규정함.
 - 생물다양성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보전
 -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함
 -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함
 -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

○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 규정(안 제3조 ~ 안 제4조)

- 구청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, 구민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함.

○ 자연환경조사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안 제8조)

- 야생 동·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,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,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등 자연환경 조사의 대상과
- 자연환경조사에 필요한 자연환경조사원 임명·위촉과 조사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(안 제9조)

-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·변경·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깃대종 지정 및 보전(안 제10조)

-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‘깃대종’으로 지정하여 보전방안 마련 및 보전대책 수립·시행을 규정함.

※ 깃대종: 어느 지역의 생태나 지리적 특성을 대표하는 동식물의 종

○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(안 제11조)

-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
- 이를 위해 구조·치료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.
- 관련기관, 단체 등을 전문구조·치료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.

○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(안 제12조)

-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.

○ 재정지원 및 교육·홍보(안 제13조~제14조)

-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는 주민,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
-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증진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종합 의견

- 본 제정안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을 조사·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생물자원의 이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, ‘자연환경보전’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¹⁾에 해당되고, 자연환경조사, 야생생물보호구역 지정 등은 상위법령²⁾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사료됨.

- 또한, 기존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11조 1항부터 3항까지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, 제4항³⁾에서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조례와의 중복 및 상충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생물다양성이 육상 및 수생 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의미하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운영해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,

- 우리구 사정에 따른 사업계획 추진과 함께, 관련 예산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.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제2항제4호 “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”

2)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보전법」,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3)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기본 조례」 제11조(자연환경의 보전)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그 밖의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참 고

강서구 내 서식지 및 생물 현황

□ 녹지지역 및 습지지역

- 강서구의 녹지면적 비율은 $22.5km^2$ (강서구 면적의 54.3%)로 상당하며 논습지 경우 강서구가 서울시 논습지 면적의 92.3%를 차지함.

※ 서울시 논습지 현황

유형	면적(ha)	비율(%)
강서구	292	92.3
기타 구	24	7.7
합계	316	100

□ 강서구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 현황

- 서울시 멸종위기 야생생물 출현지는 총 32개소이며 이중 강서구는 3개소(4종)에 해당됨.

- 3개소(4종): 강서습지생태공원 2종, 강서구 논습지 1종, 강서구 과해동 1종

- 2016년 멸종위기 I 급인 수원청개구리, 멸종위기종 II 급인 금개구리, 맹꽂이가 강서구의 농원 및 습지에서 발견
- 마곡유수지 부근에 희소성이 높은 식물 중 하나인 큰고랭이 서식

[참조: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(2022~2026)]

□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3조(기본원칙)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10.>

1. 생물다양성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.
2.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.
3.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4. 산·하천·호소(湖沼)·연안·해양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.
5. 생태계서비스는 생태계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.
6.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국제협력은 증진되어야 한다.

제24조(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) ③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16.>

④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·평가하고,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생태계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16.>

⑤ 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「수도법」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·채취할 수 있으며,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·채취할 수 있다. <신설 2018. 10. 16.>

제29조(교육·홍보) ① 정부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·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국민 등이 관련 보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□ 자연환경보전법

제30조(자연환경조사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6.>

제32조(자연환경조사원)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0조의 자

연환경조사 또는 제31조에 따른 정밀·보완조사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중 자연환경조사원(이하 “조사원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6.>

②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·위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0. 5. 26.>

제56조(자연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)①국가는 생태·경관보전지역 등 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그 지역의 유형별로 자연상징표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상징표지의 일부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 야생동·식물 또는 생태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(象徵種) 또는 상징생태계로 지정하여 이를 보전·활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5. 26.>

□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제33조(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)①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(이하 “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호구역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의 위치, 면적, 지정일시,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.

제34조의4(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·치료 등)① 환경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,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·치료,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·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 11. 26.>

②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·치료시설(이하 “야생동물 치료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19. 11. 26.>

③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·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9. 11. 26.>